

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(제45조의2제1항 관련)

1. 인적사항				
성명		생년월일		
주소				
해기사 면허증		종별	번호	
선원근로계약	선사명	선박명		
	항로명	기항지		
2. 선장의 적성검사 항목 심사				
심사항목		기준		심사결과
① 선장책임 운항사고 이력		최근 3년 이내 2회 미만		[] 회
② 해당 항로 운항경력		견습선장 1회 이상 또는 1등 항해사로 5회 이상 왕복		[] 회
③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여부		취항항로의 항로표지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한 지식		[]/[]
④ 항로특성(조류, 협수로, 암초 등) 숙지 여부		특정 항로의 위험요소 식별 및 항로특성에 관한 지식		[]/[]
⑤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		출항 시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점검항목에 대한 지식		[]/[]
⑥ 비상상황 대응 능력		화재, 폭발, 타기(舵器) 고장 및 퇴선 등 비상상황별 조치 사항 숙지 및 지식		[]/[]
⑦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 결정 능력		비상시 여객 대피 방법과 절차, 군중 관리 방법, 의사결정 방법		[]/[]
⑧ 조난 통신 능력		비상시 조난통신 장비 등 사용능력		[]/[]
비고	1. 매 항목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2. ①의 경우 선장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심사한다. 3. ②의 견습선장 경력에는 여객을 신지 않고 공선(空船)으로 항해한 경력도 포함한다. 4. ③부터 ⑧의 경우 매 항목마다 적성심사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하여야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. 5. 신규항로의 경우 남북한 항로처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거나 순항여객선 항로처럼 시험운항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시험운항이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의 해당 항로 운항경력에 대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. 6. 선박의 종류, 용도, 여객정원, 운항빈도,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성심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.			
확인자 직 성명		년 월 일 서명 또는 인		
※ 주의사항 (1)취업규제: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객선선장으로 승무 금지 (2)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 충족 여부 서류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적성검사판정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.				